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김 주 택

상지대 경상학부 회계학전공

E-mail : jtkim@mail.sangji.ac.kr

정 은 철

상지대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E-mail :

.....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 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의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서 론

조세란 국가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개별적인 대가없이 사경제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말한다. 오늘날 국가의 비용을 대부분 조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분배는 조세법률주의의 첫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¹⁾

한편, 조세의 속성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욕망

1)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서울사법행정학회, 1986. p.47.

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해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려는 노력, 즉 세무조사 등으로 양자간에는 필연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세무행정은 조세를 거두는 국가의 입장에서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양적인 측면이 강조된 반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중시되지 못함으로써, 세무조사 등 중요한 분야의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납세자의 기본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국가의 재원조달과 소득의 재분배 등 중요한 목적을 가진 세무조사는 조세의 징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양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양면을 모두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국세청에서도 조직을 기능별로 바꾸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국민의 납세의식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도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세무조사의 이론적 고찰

1. 세무조사의 의의

(1) 세무조사의 개념과 목적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사물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²⁾.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채권·채무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조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된 현실에서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불성실한 납세자의 성향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공평하고 적법하게 실현되도록 조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조세부담의 공평

2)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2001, 국세청 훈령 제1383호, 제1장 제2조 제1호.

성³⁾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불성실한 신고에 대하여 응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있다.

세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세정의의 실현이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적정하였는가를 검증하려는 것은 납세자의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을 실현하여 공평하게 조세제도를 집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고,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신고하여 탈세하려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같은 성실신고의 보장수단이 없다면 조세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는 불성실한 납세자의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 하에서 재정수요는 조세수입⁴⁾이 주가 되고 있으며, 조세수입 중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가 징수되는 조세수입은 약 1,930억 원으로 국세청 전체 조세수입의 약 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세무조사의 주목적이 불성실신고자의 신고사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통하여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는 자기부과세액을 신고하는 절차를 마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게 된다. 이때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의 절차가 없다면 납세자들은 탈세 또

는 조세회피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탈세하려고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에 널리 만연되고 있는 일반화된 현상이다.⁵⁾ 현행 확정 신고서는 첨부서류 및 신고내용에 산출근거 및 계산과정 등을 세밀하게 나타나게 하여 신고서 작성 시 자기 검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납세자의 완벽한 세무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사항을 검증하여 성실한 세무조정 및 적법한 신고를 유도하는데 세무조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신고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면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만 이익을 보게 됨으로써 조세정의의 실현에 역행하게 되고,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반대로 무거운 조세부담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공평과세를 위한 담보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하여 공평한 조세부담과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세무조사의 성격

세무조사는 일종의 행정조사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적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정보

3) 백기도, “세무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4.

4) 2000년도 전체 조세수입 991,731억원의 93.0%인 929,347 억원이 내국세 수입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참조.

5) 최평윤, “납세자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 1.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권력적 조사 활동 이다⁶⁾. 종래에는 행정조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료수집 활동인 질문·검사 등의 행정작용을 즉시강제에 포함하였다.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구체적인 결과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력적 집행 작용인데 반하여, 행정조사는 영장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행정관청인 과세관청의 행정작용 즉, 과세처분을 정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의 행정조사로 볼 수 있다.

과세요건과 사실에 대한 자료 입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 질문·검사를 받아야 할 상대방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대방은 질문·검사권의 행사에 대하여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질문·검사는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질문·검사권에 대하여는 직접적·물리적 강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과세의 공평한 부과와 확실한 조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취득·수집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문·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9호의 질서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세무조사라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

면 납세자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되므로 세무조사를 순수한 임의조사로 보기보다는 '간접적 강제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1) 납세자 권익보호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조사행정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의 저해를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의 확보함으로써 세무관서와 납세의무자간에 신뢰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특히 세무관서는 문서, 구두에 의한 행위는 물론 이들 행위의 존재와 내용이 입증되는 공표된 지시, 예규통첩, 신고지도, 안내, 취급예의 해설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으로는 첫째, 조세행정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의견표시가 있어야 하고, 둘째, 납세의무자가 조세 행정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원인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셋째, 당초 견해표시에 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 또는

6) 김동희. 행정법 I, 1998, p. 354.

이익을 침해하여야 하며, 넷째, 신뢰행위를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세무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언동이 잘못 되도록 오도하고, 잘못된 언동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처리를 한 후에 세무관서가 오류를 발견하여 적법시정을 한 경우에 그 책임은 세무관서에 있게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⁷⁾에서는 세무관서 및 납세의무자에게 모두 적용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이는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과 사실상의 귀속자를 규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귀속주체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거래내용(객체)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1) 귀속주체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귀속주체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

- 7)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8) 국세기본법, 제14조.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의 준수는 실질적 부담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게 되어 형식상 명의나 법률상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공평과세에 기여하게 된다.

2) 거래내용(객체)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거래내용(객체)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하여 요청되며 한 경제적 효과에 동일한 조세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평의 원칙상 조세법에 내재하는 지도원리이기도 하다.

(4) 근거과세의 원칙

이 원칙은 세무조사와 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기장과 상이한 조사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설명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추계과세에 의한 과세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기장을 선도하며, 납세자

와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줄이고 신고납세제도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 16조⁹⁾에서는 세무관서 및 납세의무자에게 모두 적용될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5) 조사비례의 원칙

이 원칙은 세무조사는 세부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세무관서의 무원칙한 조사범위의 확대는 피조사자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며, 이는 조세저항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조사범위의 제한은 질문·검사권 남용의 방지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2항에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등 조사범위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원칙과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범위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이 원칙이고, 실무상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명백한 세금탈루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에 연결되어 세금탈루사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탈루사실이 명백한 항목에 한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 국세기본법, 제16조.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해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의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및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6)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한다.

(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1)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8)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엄수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량권의 행사시에는 과세의 형평과 당행 세법의 목적에 따라 그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3. 조사대상자 선정

(1) 선정 원칙

조사대상자는 업종, 사업규모 및 납세의 성실도를 기준으로 직접조사 대상자와 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존중하여 성실납세를 보장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동일세목에 대해서 같은 납세자를 매년 일반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계속조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조사대상자 선정¹⁰⁾

1) 일반조사 대상자

일반조사대상자는 당해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세목별 조사지침에 따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규모, 전산분석에 의한 납세성실도, 업종의 특성, 과거납세실적, 세무정보 및 탈세제보 등을 검토하여 전부 조사 대상자와 부분조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같은 납세자에 대한 중복 조사 방지, 성실신고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평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선정을 제외할 수 있다.

2) 특별조사 대상자

특별조사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탈세정보자료 또는 간접조사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자를 선정하고 있다.

- ① 부동산투기, 전문직 사채놀이, 변칙적 상속·증여행위를 하는 자
- ② 기업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기업을 부실화시키거나 개인 재산 증식에 사용하는 자
- ③ 매점매석, 폭리, 유통질서 교란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 ④ 소득신고상황 등에 비추어 지나친 소비생활을 하거나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⑤ 국제거래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10)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9조, 참조.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자

- ⑥ 기타 경제·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3) 추적조사대상자

추적조사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고 있다.

- ① 무자료·변칙거래가 성행하는 품목 또는 이중가격형성, 매점매석 등 경제질서를 교란케 하는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중에서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 ② 자료상 혐의자 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 혐의자.
- ③ 신용카드 거래질서 문란 혐의자.
- ④ 기타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4) 기획조사대상자

기획조사대상자는 세원관리결과 다른 업종 또는 동종의 납세자와 비교하여 현저히 조세부담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질서 교란혐의가 큰 지역내의 사업자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공통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5) 선정절차

- ① 조사대상선정은 조사사무의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선

정할 수 있다.

- ③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등을 확인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조사의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II. 세무조사 제도의 현황

1. 조사기구의 현황

국가의 존립을 위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은 조세이며, 조세 중 2000년의 경우 82.1%인 71,106,081백 만원¹¹⁾를 내국세로 충당하고 있다. 내국세에 관한 행정은 재정 경제부의 세제국과 국세청이 관여하고 있다. 재정 경제부의 세제실은 내국세에 관한 제도를 기획 및 입안을 하고,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내국세의 부과 징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세무행정의 집행 기관이다.

국세청은 중앙에 본 청을 두고 지방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의 지방국세청과 99개의 세무서를 두고 있으며, 국세청장이하 2001.10 1 현재 본 청에 703명,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71명,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32명, 국세청 전화 세무 상담 센터에 101명, 지방 국세청에 2,924명, 세무서에 13,014명 등 16,845명의 인원¹²⁾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다.

국세청의 여러 기관 중 세무조사를 실제

1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12)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2001.

<표 1> 국세청 정원 (2001. 10. 1일 현재)

(단위 : 명)

구 분 \ 기 관	합 계	본 청	국세공무원 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 세무상담센터	지방 국세청	세무서
1996	17,838	704	84	39	-	2,134	14,877
1997	17,625	686	79	36	-	2,104	14,720
1998	17,253	643	71	32	-	2,172	14,335
1999	16,855	676	65	32	-	3,071	13,011
2000	16,855	705	71	32	-	3,075	12,972
2001	16,845	703	71	32	101	2,924	13,01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로 행하는 것은 국세청의 조사국과 지방국세청의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이다. 국세청의 조사국은 실지조사 실무보다는 조사의 기획,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지휘, 탈세정보 및 투기, 사채 등 음성세원관련업무, 유통과정 및 물가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며, 실지조사업무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에서 행하여진다.

지방국세청의 조사국 조사기구는 주요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서울에 집중¹³⁾되어 있는 관계로 기업에 대한 조사인력의 확보 및 조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직이 타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직에 비해 거대하다.¹⁴⁾

13)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242,652업체의 39.2%인 95,077업체가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내에 있으며, 대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대부분 서울에 있음.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2001.참조)

14)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국이 23개국인

현재 조사 범위의 축소로 조사에 경험 있는 공무원의 수가 적고, 전문적인 조사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않아서 업종별 조사전문화를 통해 업종별 조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1년 10월 1일 기준으로 국세청의 인원은 16,845명으로 본 청에 703명,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71명,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32명, 국세청 서비스센터에 101명, 지방 국세청에 2,924명, 세무서에 13,014명이 있다.

1996년 17,838명에서 2001년 16,845명으로 993명이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 이후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하여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22개국, 대전, 대구,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13개국, 부산 지방국세청의 경우 15개국으로 편성3되어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2001.참조)

<표 2> 국세공무원의 직급별 · 연령별 현황 (2000. 12. 31 현재)

연 수 직 급	계	3년 미만	3 ~ 5	6 ~ 10	11 ~ 15	16 ~ 20	21 ~ 25
합 계	14,698	7,043	3,602	3,602	344	89	18
3급 이상	40	39	1	-	-	-	-
소 계	1,054	416	219	320	71	26	2
4 급	280	137	82	51	8	2	-
5 급	774	279	137	269	63	24	2
소 계	7,973	4,159	1,582	1,880	273	63	16
6 급	2,940	1,402	365	830	264	63	16
7 급	5,033	2,757	1,217	1,050	9	-	-
소 계	5,631	2,429	1,800	1,402	-	-	-
8 급	2,748	878	1,275	595	-	-	-
9 급	2,883	1,551	525	807	-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표 3> 국세공무원의 현 직급 근무연수 현황 (2000. 12. 31 현재)

연 수 직 급	계	25세이하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세이상
합 계	14,698	851	2,821	3,471	2,118	3,136	1,445	750	106
3급 이상	40	-	-	-	-	-	16	21	3
소 계	1,054	-	24	44	25	175	388	336	82
4 급	280	-	-	-	5	30	96	136	13
5 급	774	-	24	44	20	145	292	200	49
소 계	7,973	3	641	1,458	1,452	2,946	1,039	393	41
6 급	2,940	-	-	69	388	1,367	695	381	40
7 급	5,033	3	641	1,389	1,064	1,579	344	12	1
소 계	5,631	848	2,156	1,969	641	15	2	-	-
8 급	2,748	526	523	1,042	640	15	2	-	-
9 급	2,883	322	1,633	927	1	-	-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기술연구소의 경우도 1996년 39명에서 2000년 32명으로 7명의 인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원감축으로 인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세무조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표 2>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세무조사요원으로 실무에서 활동이 가장 많은 나이는 31세에서 40세이다. 31세에서 40대의 분포를 보면 전체 8,499명중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5,589명으로 65.76%를 차지하고 있어 고위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위직 인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인원은 그 만큼 업무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2000년 12월 31일 기준 국세공무원 14,698명중 국세업무에 초급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미만 경력의 직원이 10,645명으로 전체의 72.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조사업무에 투입 할 수 있는 경력을 소지한 11년 이상의 직원은 451명(3.07%)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3,075명의 14.66%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의 구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 이후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하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은 물론 자격이 없는 직원의 경우도 자격취득을 위해 퇴직하는 사례가 많아 1999년말에 560명, 2000년

<표 4> 국세공무원의 직급별 자격현황 (2000. 12. 31 현재)

자 격 직 급	현 원 세 무 직	C.P.A	세 무 사	부 기			조사 요원	국제조세 전문요원	조세범 조사전문 요원		
				소 계	1 급	2 급				3 급	
합 계	14,698	12	312	12,198	78	12,028	92	9,240	333	1,436	
5급이상	소 계	1,094	12	210	828	40	777	11	589	16	70
	3급 이상	40	7	7	9	5	4		1		
	4 급	280	3	100	170	25	138	7	82	1	2
	5 급	774	2	103	649	10	635	4	506	15	68
6급이하	소 계	13,304		102	11,370	38	11,251	81	8,651	317	1,366
	6 급	2,940		84	2,872	8	2,831	33	2,486	98	834
	7 급	5,033		16	4,811	17	4,748	46	4,096	195	521
	8 급	2,748		1	2,377	13	2,362	2	1,543	23	11
	9 급	2,883		1	1,310	2	1,310		526	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3월말에 170명의 경력직 직원이 퇴직함에 기인한다.

국세공무원의 자질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데 2000년 12월 31일 현재로 공인회계사를 취득한 직원은 5급 이상에서 12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특히 조사국의 실무 부서에는 근무하지 않는 고위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하면 단시일 내에 개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격소지자가 312명에 불과하다.

조사국에서 가장 활동이 많은 조세법전문원은 1,436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회계분야는 물론, 재고관리 등 모든 영역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조사국의 조사기법으로는 장부 위주의 조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세무조사의 실적현황

(1) 개인소득세의 조사실적

개인소득세는 1934년 처음으로 분류과세 체계형태로 도입시행 되었으며, 1949년 소득세법이 제정됨으로서 법인소득세를 법인

<표 5>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귀속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1. 납세인원	3,657,253	3,437,818	3,495,183	3,407,662	3,480,371
① 과세미달추정인원	2,385,651	2,119,926	2,245,873	2,047,371	1,849,585
② 확정신고대상인원	1,271,602	1,317,892	1,249,310	1,360,291	1,630,786
· 과세인원비율(②/1)	34.8	38.3	35.7	39.9	46.9
2. 확정신고인원	1,247,442	1,299,442	1,225,614	1,342,153	1,616,244
①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인원	460,568	504,933	495,045	572,904	679,536
· 근거과세인원비율	37.6	39.6	40.8	43.3	44.3
② 추계신고인원	765,172	769,726	717,950	748,762	856,124
· 추계인원비율	62.4	60.4	59.2	56.7	55.7
③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자	21,702	24,783	12,619	20,487	80,584
· 비사업자인원비율	1.7	1.9	1.0	1.5	5.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표 6>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신 고 유 형	신 고 인 원		결 정 세 액	
	인원	비율	세액	비율
합 계	1,616,244	100.0	4,803,125	100.0
○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679,536	42.0	3,238,625	67.4
·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69,258	22.8	2,856,232	59.4
· 자기조정계산서첨부	55,295	3.4	119,977	2.5
· 간편 장부소득금액계 산서첨부	254,983	15.8	262,415	5.5
○ 추계신고	856,124	53.0	998,457	20.8
○ 비사업자	80,584	5.0	566,044	11.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세로 독립시키고 분류과세체계의 개인소득세를 확립하였다. 1968년 분류과세와 종합과세의 2원적체계로 개편되었다가 1975년 종합소득세체계로 전면 전환되어 1995년 신고납부제도¹⁵⁾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이른바 정부부과제도를 채택 시행하여 왔다.

정부부과제도하에서의 결정방법은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이 있으며, 개인소득세의 조사실적은 조세채권·채무의 결정방법 중의 하나인 실지조사의 실적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소득세의 조사실적은 신고납부의 오류 또는 탈루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고유의 목적이 아닌 조세채

권·채무의 확정절차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논하는 세무조사의 실적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겠다.

개인소득세의 실지조사는 가장능력이 있는 납세자 중 정부에서 정한 서면신고기준을 만큼의 실적소득이 없는 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실지조사를 신청함으로써 실시하게 된다.

<표 5> 는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현황을 나타낸다.

<표 5>, <표 6>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6년 확정신고 대상인원은 1,271,602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는 1,630,786명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다. 1,630,786명중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는 679,536명(42.0%)과, 3,238,625백만원(67.4%)으로 나타났다.

15) 1995년 귀속분을 199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

(2) 법인소득세의 조사실적

신고납부제도의 실행직후인 1981년에는 전체 가동법인 28,808개의 46.4%인 13,359개를 조사하여 신고납부세액의 검증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표 7>연도별 조사법인수 및 법인세 징수현황표에 의하면 2000년에는 전체가동법인 200,964개의 1.88%인 3,785개를 조사 701,931백 만원을 추징하였다. 조사법인의 1업체당 고지세액은 1996년 7,040백만원에서 2000년에는 19,311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그간의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 기업규모의 대형화 등의 이유가 있겠으나 "세무조사 기법의 개발 및 조사의 강도가 높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해석할수 있다."

제 IV 장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영업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때부터 행해왔던 세무행정을 통해 축적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세무당국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표 7> 연도별 조사법인수 및 법인세 징수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년도	가동법인		조사법인				자진납부	
	법인수	징수액	법인수	고지세액	고지비율	업체당 고지세액 (천원)	세액	비율
1996	131,117	9,356,104	4,465	7,040	6.0	562,205	8,793,899	94.0
1997	146,687	9,424,669	4,882	15,499	8.7	820,229	8,604,440	91.3
1998	163,250	10,775,797	4,453	19,304	6.8	737,857	10,037,940	93.2
1999	171,214	9,365,392	4,868	21,647	10.0	936,080	8,429,312	90.0
2000	200,964	17,878,435	3,785	19,311	3.9	701,931	17,176,504	96.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참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무당국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무당국이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믿음을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주는가 하는 것이다. 세무당국의 정책적 고민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막연하게 세무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무리 홍보해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세무당국에서도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과학성을 납세자들에게 믿게 할 무엇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절차나 기준이 납세자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시 많은 불만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원칙을 제정하고 이러한 원칙을 제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국내의 경제상황 및 시장조건 등 많은 변화를 반영하고, 위원구성에 있어 내부위원 및 외부인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연초에 사전 공포하여 투명한 세정집행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 미조사자 등에 대한 무작위 추

출방식을 배제하도록 한다. 매년초에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한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하여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현행 왜곡된 신고서를 평가요소로 하여 분석하는 상대평가체제에서 탈루소득 정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재산의 증감상황, 소비지출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왜곡된 신고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불성실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절대평가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실적위주의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심사분석의 영향으로 실적위주의 세무조사

심사분석은 각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지표는 대부분 업무실적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은 현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로서 시행되고 있는 심사분석 평가의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특히, 세무조사성과는 전체 심사분석 점수의 50%(세무서 40%)로 심사분석 평가에 있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사나 다른 평점에 불이익을

< 표 8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심사분석 평가지표

구 분	지방국세청		세무서(1·2군)		
	평가대상업무	배 점	평가대상업무	배 점	
납세 서비스	납세자 만족도	14	납세자 만족도 납세홍보실적 납세자 보호 담당관 고충민원	15	20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수행실	6		3	
징 세	체납액 발생비율	5	체납액 발생비율 체납액 정리실적 결정취소 비율	4	20
	체납액 정리실적	10		14	
세원 관리	신용카드 가맹점 권장실적	2	즉시처리대상 과세자료처리실적 재산세 과세자료 입력 및 처리실적 신용카드가맹점 권장실적 자체탈세정보자료 및 세원정보 수집실적	9	20
	법인세 서면분석 성과	2		3	
	자체탈세정보자료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실적	6		4	
조 사	개인사업자 조사성과	8	개인사업자 조사성과 법인사업자 조사성과 거래질서 관련 조사성과 재산세 조사성과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성과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성과	10	40
	법인사업자 조사성과	15		12	
	거래질서 관련 조사성과	6		6	
	재산세 조사성과	9		6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성과	10		8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성과	2			
감사	자체 감사실적	5	5		
가감점	신지식형 국세공무원 등에 가	(2)	조직공헌도 등에 대한 가점 법칙처리실적 등에 대한 가점 감찰분야 가감점	(3)	
	법칙처리실적 등에 대한 가점	(5)		(5)	
	감찰분야 가감점	(3)		(3)	

자료 : 국세청, 심사분석 평가규정.

당하지 않기 위해 지방국세청간, 세무서간에는 성과평가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실적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세청 내부의 결제라인에서 실적의 부담으로 인하여 일정범위 내의 실적을

법인에 가용하거나 협상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하며 책임이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가 개인기업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개선방안

1)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 개선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으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심사분석점수, 성과급 차등지급 등 조사실적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를 개선하여 실적위주의 조사를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무리한 과세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정기조사 심사 분석 시 추정실적 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회계처리오류, 법적용미숙 등 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납세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추징세액보다는 신고 성실도 검증을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심사 분석 시 적출실적 비중을 줄이고 불복이나 체납비율 등 무리한 과세에 따른 감점요인을 높임으로써 균형 있는 과세가 되도록 한다.

3) 조사진도비 평가의 보완

조사대상법인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실제 조사가동 인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평가방법은 공정한 심사분석이 될 수 없으므로 실제 조사부서의 조사가동 인력에 비례하여 조사진도비를 평가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4) 평가제외규정의 확대

추계 외 기타 평가제외 규정이 없어 조사

실익이 없는 법인도 오로지 심사분석만을 위해 조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민원만 발생시키게 되므로 심사분석대상 법인 중 기 폐업,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이미 결손 처리한 법인은 조사대상 및 심사분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면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나, 조사관들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가 없게 되고 세무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실적위주 보다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현대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가 절대적이고, 재정수입의 원천인 조세징수를 위해서 세무행정은 필연적이다.

현재의 조세제도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가 요구하는 재정수요의 대부분을 자진신고납부에 의하여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납세의식이 높지 않고 조세 그 자체가 갖는 강제성이나 사회적인 구조적 이유로 인하여 납세의식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세의 공평한 과세와 일부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한 공평과세 차원에서의 행정적인 제재를 갖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효율적인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연초에 사전공포 하여 투명한 세정집행이라는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의 개선으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조사진도비 평가의 보완, 평가제의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처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가칭)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제도의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 문헌의 연구로는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의 상황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무조사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와 정부의 마찰 및 갈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공병규, “과세행정상 세무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 국세청, 국세행정연차보고서 1998
- 국세청, 미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 1999
- 국세청, 영국의 세무조사제도, 196
- 국세청, 일본의 세무행정, 1997
- 국세청, 세무조사운영준칙, 2001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2001
- 김동희, 행정법(I), 1998
- 김성종 “세무조사의 효율성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백기도, “세무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안상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삼문, “법인세무조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차기선, “법인세 세무조사의 효율적 과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서희열, “법인세조사 실태분석을 통한 신세무조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김형상, 세무학연구, 2002
- 한국조세연구원,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2001

<외국문헌>

- Alm, James, Gary McClelland and William D. Schulze, “Changing the Social Norm of Tax Compliance by Voting,” KYKLOS, Vol. 52, Fasc. 2, 1999.
- IBFD, The International Guide to the Auditing, R. N. J. Kamerling(ed.), 1999.
- Schneider, Friedrich and Dominik Enste, “Shadow Economies : Size,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2000.
- Slemrod, Joel(ed.), Why People Pay Tax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2.

A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Way of Tax Investigation System

Ju-Taek Kim, Eun-Chul Jung

Abstarct

Most of the taxes in Korea are collected using a voluntary reporting payment system that meets most financial requirements. However, many people are unaware of their tax liability, and legal forces to ensure payment of taxes are weak within the Korean social structure. Therefore, the tax system cannot depend only on people's awareness of their tax liability, and for these reas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nvestigating a system for fair tax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tax evasion. In addition, an improvement to the taxation system is strongly demanded in order to protect taxpayers' rights, and improve the efficiency and rationality of the system. In this study, I compare and analyze the problems related to each nation's tax investigation system, and then propose an improved plan for a tax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in the bylaws of the Office of National Taxation that the investigator's performance rating or incentives are not affected in any way by the tax investigator's actual records on tax collection, as this type of evaluation can easily lead to conflicts with the primary goals of the law or written constitution.